

사업내 직업훈련 제도 개선

本会에서 지난 82年 4月 28日 노동부에 건의한 사업내 직업훈련제도 개선안이 노동부 고시 제20号와 社訓 1455.1-14308로 다음과 같이 결정 되었기에 알려 드립니다.

개선 건의안 내용

1) 훈련비율 인하조정 -'82年 1月 1日로 소급

적용

2) 분류업종의 조정(社訓 1455.1-14308)

'83훈련비율 책정시에 사업 성질상 세분화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3) 재직자 향상 훈련범위 확대

현행('82年)은 15% 범위내에서 실시(의무 인원 중)중이나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 예정.

내 용	총점적용 비율 (%)	별 경 둘
3832 R/TV 및 통신장비 제조업	4.0	2.5
3833 가정용 전기기구 제조업	4.0	3.0
383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 기계기구 제조업	4.0	3.0

<노동부 고시 第20号>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전대차관 이용안내

韓國輸出入銀行은 우리나라의 대태국 소규모 자본재의 연불输出을 지원하기 위하여 태국Thai Farmers Bank에 US 500万弗의 전대차관을 기공여('80. 1. 28)한 바 있으나, 인출기간 만료시까지 同 자금이 소진되지 않아 지난 5月27日 다음의 내용과 같은 금융조건으로 Thai Farmers Bank와 수정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자금은 우리나라로부터 태국에 輸出하는 자본재에 대한 대금결제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輸出業者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각 業体는 이를 활용하여 輸出增大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韓國輸出入銀行 심사 2부(전화 : 778-3950/9, 교환464)로 문의 바랍니다.

* 태국의 Thai Farmers Bank에 대한 전대차관 협정 개요

1) 차주은행 : Thai Farmers Bank

142 SILOM ROAD, BANGKOK,
THAILAND

2) 수정협정 체결일자. 1982.5.27.

3) 응자한도 : US \$ 5,000,000

4) 이 율 : 연 10%(전대이율 연 12%이내)

5) 선수금 : 인도금액의 15% 이상

공지사항

- 6) 건당 선적금액 : 미화 100천 \$ 이상
- 7) 인출기간 : 1983. 11. 30까지
- 8)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 인출기간 종료일로부터 4년 6개월간 매 6개월마다 분할상환
- 9) 용자대상 품목
 - ① Industrial machinery, including plastic and chemical machinery

- ② Electrical machinery other than those for home and office use and entertainment
- ③ Transportation machinery for industrial use
- ④ Rolling stock, ships and industrial plants
- ⑤ Steel structures and containers

工場 새마을운동 추진 일원화 시행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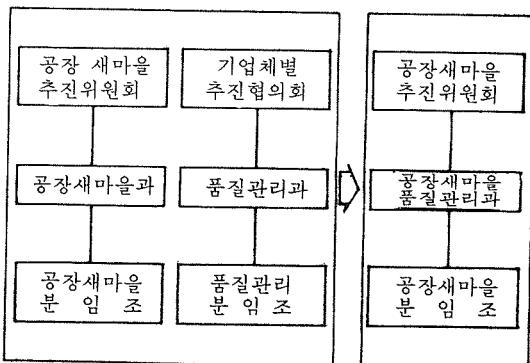
현재 각 개별기업에서 조직 운영되고 있는 품질관리 분임조를 비롯한 품질관리운동을 공장 새마을운동으로 일원화 하여 추진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장 새마을운동 추진 일원화 시행지침을 알려 드리오니 앞으로도 공장 새마을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새마을운동 추진 일원화 시행지침

1. 추진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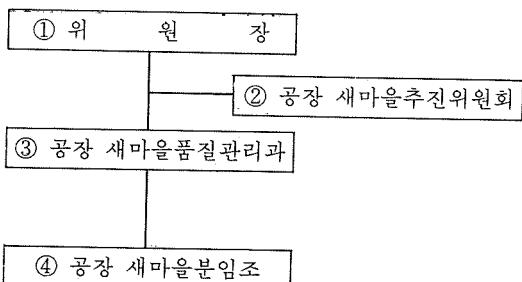
1) 일반사항

공장 새마을운동 추진조직이 품질관리조직을 일원화하여 추진



2) 시행지침

(가) 공장단위(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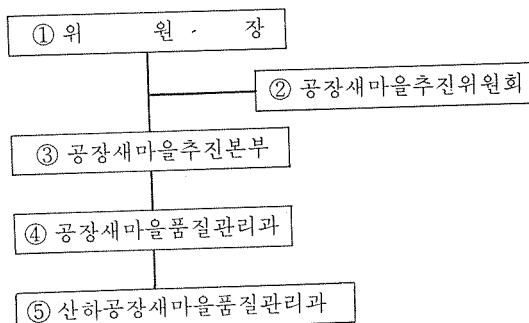
※ 산하에 별개의 제조업체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산하공장이 1개 이하인 제조업체도 이에 해당됨.

- ①의 위원장은 공장 새마을추진위원회 위원장임.
- ②의 공장 새마을추진위원회는 기업체별 품질관리추진 협의회를 흡수하여 위원장은 사장 또는 공장장이 되고 위원은, 사용자측이 임원 및 부서장, 근로자측은 일선지도자(분임장포함) 및 노조 대표가 됨.
-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노사대화의 창구, 자율적인 복지향상사업 선정추진 생산성향상, 품질관리주도 동일.
- 추진위원회의 운영은 반드시 월 1회 이상 회의 소집하여 전원 합의제로 운영하여야 하고

일단 결의된 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할 때는 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함.

- ③의 공장 새마을품질관리과는 단위기업 또는 단위공장의 공장 새마을 및 품질관리운동 추진중앙기구를 지칭하는 바 국, 부로할 경우에는 그 명칭을 공장 새마을국, 공장 새마을부로 하며 단일과로 할 경우에는 공장 새마을 품질관리과로 하여야 함을 예시한 것임.
- 국, 부로할 경우 그 산하기구로서 공장 새마을과, 품질관리과…… 또는 공장 새마을담당, 품질관리담당… 등을 들 수 있음.
- ④의 공장 새마을분임조는 기업·공장내의 모든 분임조의 명칭을 공장 새마을분임조로 그 명칭을 통일하여야 함을 뜻함.

(나) 본사 및 그룹단위(예시)



- 산하에 별개의 제조업체나 2개 이상의 공장이 있는 대기업 및 대기업 그룹본부가 이에 해당함.

- ①의 위원장은 공장 새마을추진위원회 위원장임.
- ②의 공장 새마을추진위원회는 본사 및 그룹본부의 품질관리추진위원회를 흡수하여 위원장은 본사 사장 및 그룹 회장이 되고 위원은 산하회사 사장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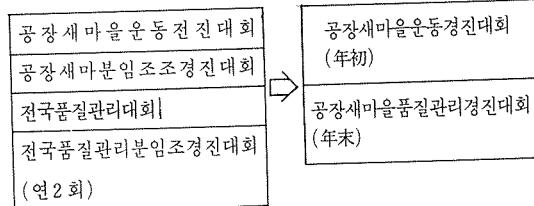
- ③의 공장새마을추진본부는 본사 및 그룹본부내의 품질관리추진본부 등을 흡수함.
- ④⑤항은 (가)항의 ③항을 참조하여 본사 및

그룹의 실정에 맞게 할 것.

2. 행 사

1) 일반사항

- 행사 성격, 내용 등이 유사한 대회를 통합 일원화



2) 시행지침

행사명	공장 새마을운동 전 진 대 회	공장 새마을품질관리 경 진 대 회
구분	새 마 을 운 동 중 앙 본 부	공장 새마을운동추진 추진본부표준협회
주 관	상 공 부	상 공 부, 공 진 청
후 원		

- 공장 새마을품질관리 경진대회의 세부행사계획(장소, 참가범위 및 인원, 포상, 지역예선, 소요경비)의 수립 및 시행을 종전대로 공진청 및 표준협회에서 한다. 다만, 사전에 상공부와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협회를 거쳐야 한다.

- 전국 공장 새마을품질관리경진대회 개최 세부계획은 관계기관에서 작성중이므로 5월중에 관계기관-각 시·도
추진본부-각 시·도지부 및 추진지부로 별도 시달릴 것임.

- 각 지역의 분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부별 및 공장별 분임활동 경진대회는 시기에 관계없이 개최할 수 있으나 그 명칭은 반드시 “공장 새마을품질관리경진대회”이어야 함.

3. 보 고

1)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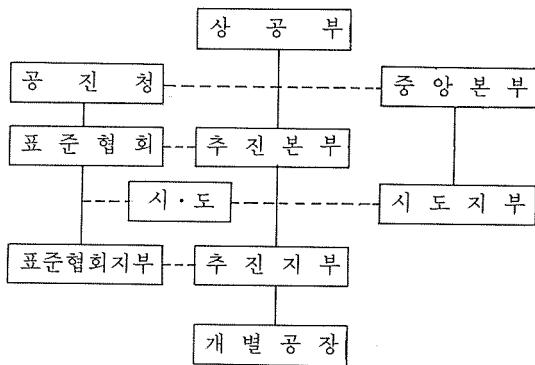
- 개별업체의 공장 새마을운동 및 품질 관리운

공지사항

동에 관련된 일체의 보고는 공장 새마을운동추진본부(지부)에 일원화.

2) 시행지침

● 보고 체계



- 개별업체는 공장 새마을운동추진지부의 보고통제를 받는다.
- 추진지부는 추진본부의 보고통제를 받는다.
다만, 업무성격상 표준협회지부와 관련된 사항은 상호 협조한다.
시·도 및 새마을운동 시·도지부도 위와 같다.
- 추진본부는 상공부의 보고통제를 받는다.
다만, 업무성격상 표준협회와 관련된 사항은 상호 협조한다.
- 분임조 등록은 공장 새마을운동 추진지부로 하고, 등록 분임조의 총관리는 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에서 한다.
- 개별업체의 공장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일체의 사항과 품질관리운동 중 종전 한국공업 표준협회 본·지부에 보고하던 모든 사항(분임조 등록분임조활동상황 등)은 각지역 공장

새마을운동추진지부로 일원화하여 보고함.

- 위 보고를 제외한 품질관리에 관한 보고사항 중 종전 한국공업표준협회 본·지부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직접 보고하던 사항은 종전 대로 개별 기업체에서 각 행정기관에 보고함.
- 각 추진지부에서의 분임조 등록, 접수와 등록 중 발급업무는 6월 1일부터 시행함.

— 분임조 등록접수의 제반양식은 각시·도지부 공장 새마을부에서 각 시·도청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인수, 각 추진지부에 배포하고 아울러 기등록대장도 인수배포 할 것(전라북도는 전주지부에서 인수 배포)(이 사항에 대하여는 공업진흥청에서 각 시·도로 시달한 바 있음).

— 분임조 등록에 필요한 양식은 공장별 분임조 카드, 분임조 등록카드, 분임조등록(총괄업종별)대장, 분임조 등록대장(업종) 등인 바 카드에 인쇄된 품질관리분임조란 용어는 공장 새마을분임조로 정정하여 사용할 것.

— 각 시·도와 협의하여 현재의 품질관리분임조등록증은 공장 새마을분임조로 정정, 재인쇄하여 발행하고 등록증의 발급자명의는 ○○시·도 품질관리 추진본부장 및 ○○시·도 공장 새마을추진협의회 회장 공동으로 할 것(시·도 지부 공장 새마을부에서 조치).

— 분임조 등록증의 발급번호는 ○○시·도 ○○제○호로 할 것.

(예) 서울 동부지부의 경우 서울 동부 제○호로 할 것.